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전주기 기업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기 기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8일

울산광역시장,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지원(기업부담금 10% 이상, VAT별도)
 - * 지원유형별 차등지원
- (지원기간) 2025. 4. ~ 2025. 11. (8개월)

2. 지원대상

- 울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
-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전 분야
 - 모빌리티 : 자율주행, DRT 등
 - 에너지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등
 - 라이프 : 도로위험 감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등
 - 데이터 : AI기반 교통량 데이터 플랫폼 등
 - 그 밖의 스마트시티 관련 전·후방분야

3. 세부 지원내용

- (장비지원) 제품 품질 및 성능검증을 위한 장비활용 지원을 통한 제품 품질 경쟁력 확보
- (기획지원) 전문기관-전문가-기업 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세미나 등의 기술교류를 통한 기업의 역량강화 및 사업다각화 지원

지원 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기간 및 한도	지원 기업수	비고
실증 지원	장비 지원	· 연구개발, 공정개선 등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	· 5개월 · 최대 10백만원	10건	울산TP 장비 활용은 미해당
	기획지원	· (네트워크구축) 과제기획지원 연구회 구축 및 운영 지원 · (세미나) 참여인력 역량강화 위한 세미나 개최 지원 · (기획지원) 사업분석, 전략도출, 컨설팅 등 지원	· 5개월 · 최대 15백만원	6건	네트워크, 세미나, 기획 지원을 통해 기획 보고서 도출 필수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현장확인
- (평가항목) 필요성(10점), 계획 적정성(20점), 타당성(10점), 목표달성 가능성(20점), 차별성(20점), 기업역량(20점)
 - * 가점(3점) : IT관련 업종(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평가표(붙임 1)에 맞게 평점을 산정한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발표평가 점수를 산출

$$\text{발표평가 평점} = \frac{\text{평가점수 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순으로 현장확인 대상과제를 정하며, 예산 및 목표수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는 후보과제로 등록
- (현장 확인)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신청기업의 정상 운영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5. 추진일정

- 계획서접수 : 2025년 4월 8일(화) ~ 2025년 4월 22일(화), 17:00까지



6. 접수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4. 8.(화) ~ 2025. 4. 22.(화)
- (접수기간) 2025. 4. 8.(화) ~ 2025. 4. 22.(화), 17:00 까지
- (접수처 및 접수방법)

구 분	내 용
접 수 처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s://platform.utp.or.kr/ 접수
접수절차	① (회원가입)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으로 가입 필수 ※ 신규 회원 가입 시, 관리자 승인 대기 시간 발생함(승인 1일 소요)
	② (접수절차) 로그인 → 공고목록 확인 → 해당 공고조회 → 첨부파일 목록 내 공고문 및 신청서 확인 → 지원프로그램 참가신청서 작성
	③ (파일 업로드) 사업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붙임 양식 모두 작성한 후,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p>①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입이 없도록 주의</p> <p>②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 지원 제외 처리</p> <p>③ 접수 시 등록된 담당자 E-mail 및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평가 일정 등 안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p> <p>④ 원칙적으로 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는 받지 않음</p> <p>⑤ 필요시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p>

7.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비 고	
1	사업신청서	1부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3
3	정부사업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1부	붙임 4
4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1부	붙임 5
5	개인정보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1부	붙임 6
6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7
7	국세 완납 증명서	1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8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9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10	최근 년도('24)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 (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1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www.kita.net)
11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21~'23년)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제출	각 1부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제출 ·가결산 재무제표 불가
12	고용실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8. 유의사항

- (신청제외 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울산TP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

- 사업비 통장 신규개설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부가가치세(VAT)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등 불인정)
 - 사업비 내 회계정산 비용 50만원 편성 필수
 - * 회계정산은 운영기관에서 추천한 회계사무소에서 수행
- 사업 종료 후 3년간 매출액 및 고용정보 등 제공 필수
 - * 국세청 표준제무재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사업 수행 중 또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부정수급 발견시 사업비 환수 및 추후 사업참여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 서류가 발생할 경우, 접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선정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 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 통보)
- 선정 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 및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단,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 취하가 확정되었을 때 잔여 사업비 사용 가능)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①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②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③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④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 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⑥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수급 및 사용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음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함

10. 이의신청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이의신청 방법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붙임 2.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이메일 (yhkim17@utp.or.kr) 또는 우편(울산시 중구 종가로15 본부동 201호)을 통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11. 관련법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다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12. 문의처

지원유형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기획지원	김용호	미래전략혁신본부	052-219-8646	yhkim17@utp.or.kr
장비지원	김상균	자동차기술지원단	052-219-0833	skkim@utp.or.kr
	임기영	자동차기술지원단	052-219-0822	ky0256@utp.or.kr

붙임 1

평가지표

대면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평가내용
필요성(10)	10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적정성(20)	1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 계획의 적정성
	10	◦ 성과활용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10)	5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5	◦ 지원금액의 적정성
가능성(20)	10	◦ 사업추진 전략의 우수성 및 성과달성 가능성
	10	◦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차별성(20)	20	◦ 사업화 제품(기술)의 차별성
기업역량(20)	5	◦ 매출액 증가율
	5	◦ 영업이익 증가율
	5	◦ 부채비율
	5	◦ 수출실적 여부
가점(3)	3	◦ IT관련 업종(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확인)
합계	100(3)	-

※ (참고) 기업 역량 배점기준

항목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수출실적	○	-	-	-	X

- *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21년 ~ '23년 평균성장률 평가
-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 '2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 부채비율은 '23년 기준, 수출실적은 '24년 실적만 인정

붙임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검토내용	해당	비해당
<input type="checkbox"/>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
<input type="checkbox"/>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총괄책임자, 담당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정부지원금, 지자체, 민간지원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지 여부	/	✓
<input type="checkbox"/> 지원과제 중복성 여부 ▶ 신청기업이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금을 받았는지 여부	/	/
<input type="checkbox"/> 지원 외 항목 신청 및 울산 내 사업장 소재 여부 ▶ 지원항목 및 내용과 맞지 않는 분야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 ▶ 사업기간 내 울산광역시내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	/
<input type="checkbox"/>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 여부 ▶ 기업이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연도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 기타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귀하

붙임 5

정부사업 중복지원 검토 확인서

- ※ 2022년 ~ 2025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 받은(혹은 예정인) 기록 모두 기재(2025년 선정 사업도 기재)
- ※ 참여한 사업명, 지원받은 과제(아이템) 이름, 지원기관명, 협약기간 정확하게 작성
- ※ 사업명은 반드시 수행기관에서 공고하는 사업명과 동일하게 기재
- ※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항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함
- ※ 해당사항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No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정부지원금 (원)
예시	기술이전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인공지능 분석을 위한 xy 시스템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재)울산테크노 파크	2021.1.1. ~ 2021.12.31.	30,000,000원
1					
2					
3					
4					
5					
6					
7					

울산광역시·(재)울산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전주기 기업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 제출한 사업내용을 확인하였고, 상호신뢰를 통한 과제수행에 동의하며, 여타 정부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기업)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전주기 기업지원사업)」 참여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중간·최종평가 진행 및 관리, 협약 및 협약 후 사업운영,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소속 및 직위, 이메일, 기업명, 학력 및 경력 사항, 신청과제명, 사업개시일,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업태·종목, 주생산품,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수출액, 종업원수, 소재지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협약 종료 후 5년까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울산광역시·(재)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전주기 기업지원사업)」 담당부서

5.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본 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울산광역시·(재)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전주기 기업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신청자격 검토, 중복지원 검토, 선정평가 진행, 선정 후 협약진행, 협약 후 사업운영, 협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동의

울산광역시·(재)울산테크노파크는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전주기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재)울산테크노파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신청,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해 아래의 내용에 따라 각 패밀 리 사이트에 제공하게 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1-1.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1-2.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2-1.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지원사업 중복지원 검토
 - 2-2.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자의 신청자격 검토를 위한 신용정보 조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3-1.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과제명, 신청과제내용 등 중복지원 검토에 필요한 항목
 - 3-2.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용정보조회에 필요한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4-1. 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신청일로부터 중복지원 검토 종료 시까지
 - 4-2. 신용정보조회기관(기업) : 신청일로부터 신청자격 검토 종료 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5년 월 일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날인
대표자		123456 - 1XXXXXX *생년월일 + 성별구분까지만 기재	(인)
주담당자			
부담당자		*주담당자와 같을 경우 생략	

※ 반드시 수기 작성

(재)울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울산광역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전주기 기업 지원사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참여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